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69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서영석 · 노종면 · 이해식
허성무 · 윤종균 · 문진석
김원이 · 박민규 · 윤준병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정보를 조회·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위생품을 말한다.</u>
<u><신설></u>	제14조의2(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제1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신 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신 설>

장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위생용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u>품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32조(벌칙) ----- -----
--	---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u> <u>하여 자료·정보를 조회·사</u> <u>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u>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